

# Sh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1515/1644-1515)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(www.suhyup-bank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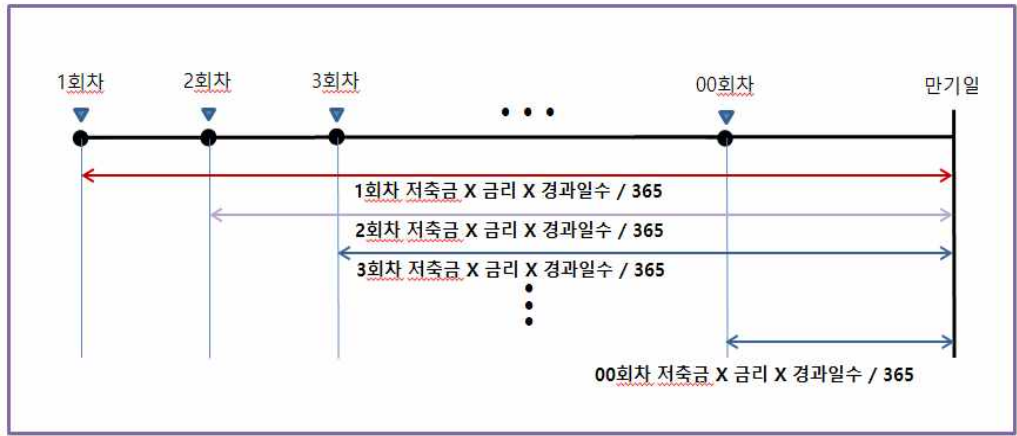
- 상품명 : Sh장병내일준비적금
- 상품특징 : 국방부 등과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의무복무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립식예금

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예금상품계약서, 통장(증서)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모두를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요원, 대체복무요원 (금융기관별 1인 1계좌*) * 단, 만기해지 후 재가입 불가</li><li>1.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</li><li>2.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"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" 원본 제출 - 단,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<sup>주1)</sup>로 제출된 "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"도 가능</li></ul> <p>주1)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(결재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"자격검증정보", "자격검증확인"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</p>
가입금액	1원 이상
상품유형	자유적립식예금
계약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신규일부부터 전역(또는 소집해제)예정일까지(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, 일단위)</li><li>※ 남은 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시 가입 불가</li><li>※ 이 적금 가입후 법령 등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더라도 적금만기일 변경 불가</li><li>※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 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)</li></ul>

거래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 : 영업점, 스마트폰뱅킹(파트너뱅크)</li> <li>• 해지 : 영업점, 스마트폰뱅킹(파트너뱅크)</li> </ul>												
저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</li> <li>※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의 금융기관 합산 저축한도는 고객별 월 55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 설정 및 입금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
계약해지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(파트너뱅크)을 통해 해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마트폰뱅킹(파트너뱅크)을 통한 해지는 ①, ②,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</li> <li>① Sh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</li> <li>②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“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”로 전역이 확인되는 경우</li> <li>③ 수협은행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유</li> <li>※ 단, 중도해지, 조기전역, 신분전환(병↔간부), 복무변경(현역, 상근예비역↔사회복무요원)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대면 해지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•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<b>불가능</b></li> <li>•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</li> </ul>												
만기 앞당김 지급 (해지)	불가												
기본금리 (세금공제전) (기준일:2025.11.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(단위 : 연, %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간</th> <th>금리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이상-6개월미만</td> <td>3.5</td> <td rowspan="4">※ 기간 중 고정금리 적용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-12개월미만</td> <td>4.0</td> </tr> <tr> <td>12개월이상-15개월미만</td> <td>4.5</td> </tr> <tr> <td>15개월이상-24개월이하</td> <td>5.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간	금리	비고	1개월이상-6개월미만	3.5	※ 기간 중 고정금리 적용	6개월이상-12개월미만	4.0	12개월이상-15개월미만	4.5	15개월이상-24개월이하	5.0
기간	금리	비고											
1개월이상-6개월미만	3.5	※ 기간 중 고정금리 적용											
6개월이상-12개월미만	4.0												
12개월이상-15개월미만	4.5												
15개월이상-24개월이하	5.0												
1%이자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% 이자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병역법 시행일(2021년 10월 14일)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되며, 24년 이후 납입금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지급액,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 세부 내용은 &lt;별지1&gt; ‘1% 이자지원금’ 참조</li> </ul>												
매칭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칭지원금이란, 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준비금으로, 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)에서 정한 금액(※ 24년 1월 1일 현재 : 22년 납입 원리금<sup>주1)</sup>의 33%, 23년 납입 원리금<sup>주1)</sup>의 71%, 24년 이후 납입 원금<sup>주2)</sup>의 100%)으로 합니다.</li> <li>주1) 납입 원리금 = 적금 ‘납입건 별 원금’ (A)에 ‘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‘1% 이자지원금’ (C)을 합산한 원리금(A+B+C)</li> <li>주2) 납입원금 = ‘납입건 별 원금’ (A)</li> <li>• 지원비율,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 세부 내용은 &lt;별지2&gt; ‘매칭지원금’ 참조</li> </ul>												
만기이자 산출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기이자는 매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(경과일수)에 대하여 만기(약정)금리로 이자 계산하여 합계(원미만 절사)함 [이자계산 산식] = {회차별 저축금 × 만기(약정)금리 × 회차별 경과일수(입금일-만기일의 전일까지)} ÷ 365의 합</li> </ul>												



**만기 후 금리**  
(세금공제전)  
(기준일:2025.11.25)

기간	이율	비고
만기후 1년 이내	만기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상호부금 기본금리*의 1/2	만기후금리는 만기일에 결정됩니다.
만기후 1년 초과	만기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*	

\*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호부금 또는 보통예금의 기본금리임

**중도해지금리**  
(세금공제전)  
(기준일:2025.11.25)

• 가입일 당시 은행이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입금건별로 적용

(단위 : 연, %)

기간	금리	최저금리	비고
1개월미만	0.1		금리가 최저금리 미만인 경우에 최저금리 적용
1개월이상~3개월미만	0.1		
3개월이상~6개월미만	기본금리*×3/약정기간***×50%	0.10	
6개월이상~10개월미만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/약정기간***×60%	0.10	
10개월이상~11개월미만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/약정기간***×80%	0.10	
11개월이상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/약정기간***×90%	0.1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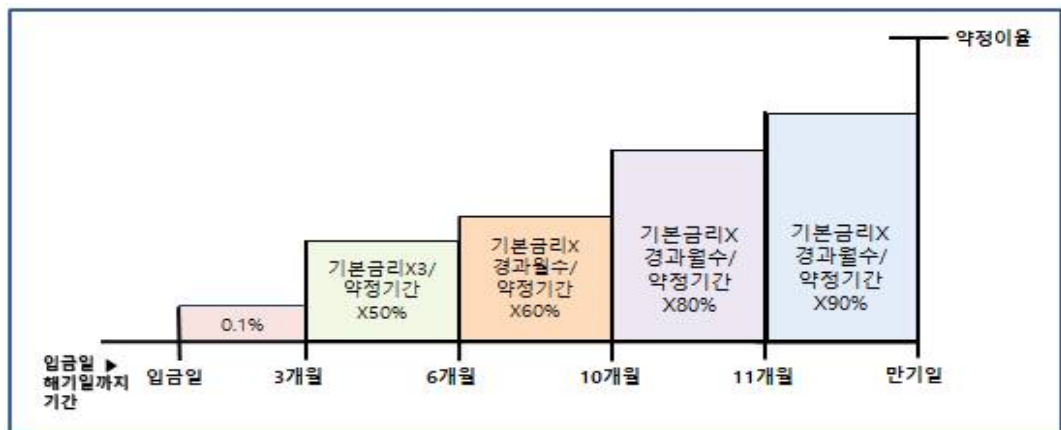
\* 기본금리 :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(우대금리 제외)

\*\* 경과월수 :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하며 약정기간을 초과할수 없음

\*\*\*약정기간 :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

**중도해지이자 산출 근거**


• 계산방법(예시)

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경과월수(\*개월수)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는 아닙니다.

**이자 지급 시기**

- 만기(후)이자 지급시기 : 만기(후)해지 요청 시 일시지급
- 중도해지이자 지급 시기 : 만기일 전 중도해지 요청 시 일시지급



연계·제휴서비스 (수수료면제서비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적금의 가입기간 동안 당행 보유 입출금통장을 통해 거래시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금융 당·타행 이체수수료 면제(자동이체 및 상담원을 통한 이체 제외)</li> <li>당·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(제휴ATM기 제외)</li> </ol> </li> </ul>	
예금자보호여부	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세 제 혜 택	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 따라 만기일 이후 해지시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되며, 만기후 이자는 과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li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li> <li>※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시 비과세 적용 불가</li> <li>※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불가 (단,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가능하며, '25.1.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횡수 미포함)</li> <li>※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 설정 (단, '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
양도및담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도 불가</li> <li>담보제공 :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계좌잔액의 95%까지 가능</li> </ul>	
자 동 재 예 치	불가	
부 분 인 출	불가	
무 통 장 거 래	가능	
자 동 이 체 입 금	가능	
원 금 이 제 자 지 및 급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좌에 압류<sup>주1)</sup>, 가압류<sup>주2)</sup>, 질권설정<sup>주3)</sup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/li> <li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</li> </ul>	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<sup>주4)</sup>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<a href="http://www.sleepmoney.or.kr">www.sleepmoney.or.kr</a>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</li> </ul>	
위 법 계 약 해 지 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</li> </ul>	

	<p>거절 시에는 <b>거절사유와 함께 통지</b>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<b>자 료 열 략 요 구 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<b>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</b>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<b>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b></li> </ul>

##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(www.suhyup-bank.com)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(☎ 1588-1515/1644-15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설명서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,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적금은 국방부 등과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-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이 예금은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**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**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**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·추가납입·1% 이자지원금·매칭지원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, 비대면 해지 모두 불가합니다.**
- 이 상품을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'25.1.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이 상품의 신규일이 '25.1.2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. 이 상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.
- 단, 이 상품을 '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-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1515/1644-1515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suhyup-bank.com](http://www.suhyup-bank.com)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-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**

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 형태		
특징	▶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▶ 일정주기(3/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
장점	▶ <b>시장금리 하락기</b> 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▶ <b>시장금리 상승기</b> 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
단점	▶ <b>시장금리 상승기</b>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▶ <b>시장금리 하락기</b>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# <별지 1> 1% 이자지원금

☞ 1% 이자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불가 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(☎ 02-3146-6544, 6545) 및 병무청(☎ 042-481-3043, 사회복무요원인 경우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1 % 이 자 지 원 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</li> <li>• ‘1% 이자지원금’은 23년까지 납입금에 대해 지급되며, 24년 이후 납입금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</li> </ul>
지 급 금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동안 연 1%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</li> <li>※ 실제 예치일수 :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</li> </ul>
지 급 대 상 및 지 급 조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만기해지 계좌</li> <li>② 만기 해지 시 다음 각 목의 확인(증명)서 어느 하나를 제출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) 원본</li> <li>나. 비대면 만기 해지 시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하는 “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”</li> <li>다.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에 제출하는 “역종 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” 원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알 아 두 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도해지 계좌는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li> <li>• 1% 이자지원금은 국가(국방부, 병무청)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,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거나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%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가입자가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이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합니다.</li> <li>•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)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1%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)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비대면 해지 시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“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”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원본 제출 생략 가능하며,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에 제출하는 “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” 원본 제출도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만기 시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%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주는 추후 은행에 1% 이자지원금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•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% 이자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</li> </ul>

## <별지 2> 매칭지원금

매칭지원금의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, 정부지원 비율은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.  
 매칭지원금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(☎ 02-3146-6544, 6545) 및 병무청(☎ 042-481-3043, 사회복무요원인 경우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매칭지원금 및 지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칭지원금이란, 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준비금으로, 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)에서 정한 금액(※ 24년 1월 1일 현재 : 22년 <u>납입 원리금</u><sup>주1)</sup>의 33%, 23년 <u>납입 원리금</u><sup>주1)</sup>의 71%, 24년 이후 <u>납입 원금</u><sup>주2)</sup>의 100%)으로 합니다.</li> <li>주1) 납입 원리금 = 적금 '납입건 별 원금' (A)에 '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'1% 이자지원금' (C)을 합산한 원리금 (A+B+C)</li> <li>주2) 납입원금 = '납입건 별 원금' (A)</li> </ul>
지급대상 및 지급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별표1&gt;의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과 동일합니다.</li> </ul>
지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칭지원금은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.</li> </ul>
알아두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도해지 계좌는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li> <li>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가입자가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이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합니다.</li> <li>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)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매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)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, 비대면 해지 시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"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"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가능하며, <b>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에 제출하는 "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"</b> 원본 제출도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.</li> <li>매칭지원금은 만기해지일이 속한 월의 다음월에 지급됩니다.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

## 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주1) 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 </ul>
주2) 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 </ul>
주3) 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</li> </ul>
주4)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